

1894-1910년 한국과 일본 근대기록구조의 중층성과 종속성*

- 전북지역 전략적 인프라구축기록을 중심으로 -

Layered and Dependent Structure of the Modern Official Documents in Korea and Japan (1894 - 1910): Focusing on the Documents Related with the Strateg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Jeonbuk Province

김 경 남 (Kyung-nam Kim)**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한국통감부 설치와 한일간 기록관리의 중층적 구조 |
| 2. 갑오개혁기 일본식 공문서체제로의 전환과 일본의 한국내 전쟁기반구축기록 | 4. 맺음말 |

<초 록>

본고의 목적은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과 일본 공문서관리시스템의 중층적·종속적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기록사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는 일제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장악하여 조선을 침탈해가던 시기로서 그 내용은 일본제국이 청일전쟁·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에 전략적으로 구축한 인프라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갑오개혁기와 통감부시기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예산·인사 결정 관련 상위레벨의 결재 원본 출처와 편성 실태를 밝히고, 한국 내각과 통감부가 작성한 하위레벨 공문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한국의 공문서관리제도는 일국사적 관점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되며, 한·일간 수직적 연관구조 속에서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공문서, 통감부, 일본내각, 전주, 인프라구축, 결재시스템의 중층성, 종속구조, 제국주의 전쟁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terrogate the layered and dependent structure of the modern and official document management in Korea and Japan from 1894 to 1910. The focus of its study is on documents related with the strateg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Jeonbuk Province through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 archival studies. For this study, the chosen period was when Japanese imperialists were on their way to seize the Korean official archival system. As such, our objects are the documents connected with the institution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system in Korea and its infrastructural constructions as part of Japan's war plans of invading the continent. Among others, we examined the documents of the strateg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round Jeonju in Jeonbuk Province by Imperial Japan, in order to wage the Sino-Japanese War and subdu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ore specifically, we illuminate the sources and organization of the approval of the original documents in a higher level that is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f political, financial, and personnel matters, which were designed for the Japanese governmental rule over Korea from the era of the Gabo Reform to the period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s, as well as analyze the actual states of the official documents in a lower level, which were drawn up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esident-general.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that official Korean archival system at this time must be understood under the context of a layered and dependent structure within the vertical connec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not from the point of view of a national history.

Keywords: official documents, Japanese residency-general of Korea (Tonggambu), Japanese cabinet, Jeonju, infrastructure construction, layered structure of approval systems, dependency, imperialist war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361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kyeongkim@hanmail.net)

■ 접수일: 2015년 7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5년 7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31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55-86,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3.055>

1. 머리말

갑오개혁기 개화과정권은 일본의 절대적 영향으로 공문식을 제정 반포하여 조선왕조시대 중앙기록관리의 골간을 형성하던 경국대전 공문서체계를 전면적으로 대체하였다(權泰億, 1994; 金才淳, 1995; 金泰雄, 2000; 이경용, 2002a, 2002b; 김건우, 2006, 2008a; 이영학, 2007, 2013; 박성준, 2009; 정일균, 2009, 2014). 종래 경국대전 공문서체계는 주로 왕실 기록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존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이 생산되었으며 국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신병주, 2006, pp. 1-15). 이러한 기록 보존 전통은 일제에 의해 거의 단절되는 위기에 빠졌고, 갑오개혁기 일본에서는 폐지된 기록관리제도인 공문식이 조선에서 부활하여 일본식으로 체계화되었다(이경용, 2002a, pp. 59-96; 김건우, 2006). 이에 개화파들의 독립적인 개혁사안도 있었지만, 대체로 통감부시기가 되면, 이른바 ‘근대적’으로 바꾼 제 제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제도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장악함으로써 조선침탈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이영학, 2013).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결재 원본들 즉 상위레벨의 기록은 현재 어디에 어떻게 보존되어 있으며, 이 원본기록은 한국과 일본의 기록관리제도에서 어떻게

위치지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전략적으로 이른바 근대적인 인프라체제를 구축하고, 제도적으로는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기관으로 통감부를 설치하는 등 한국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만들어냈다. 이 정책제안서는 일본내각에서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일본내각과 ‘천황’(天皇, 이하 천황이라 표기)의 결재를 통해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정책제안서는 상위레벨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시행된 제 정책에 대한 기안문은 일본에서 작성되고 보존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일국사적으로 완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김경남, 2014).¹⁾ 개화정권이 갑오개혁기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는 1886년 『各省官制通則』으로, 이를 참고하여 내각과 왕실의 분리, 공문표준화, 기안문·시행문 분리구조를 만들어 이른바 ‘근대적’ 기록관리제도가 탄생하였다. 이 방식은 경국대전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점으로, 일본에서 기안하고 한국에서 시행해야하는 구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본정부와 개화정권이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일본식으로 바꾼 것은 일본의 대륙침략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²⁾ 일본정부와 군당국은 한국을 대청국, 대러시아로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생명선’으로 인식하

1) 이러한 구조는 일제강점하 조선총독부시기에도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2) 일본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945년까지 제국주의의 식민지정탈전에 참전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쟁과 관련되어 일본정부와 일본군 당국이 생산한 기록은 류큐왕국, 대만, 조선국, 만주국, 중국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대만과 조선국의 경우 윤요호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전쟁터와 식민지로 전략하게 되었다.

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는 전쟁터와 군수물자조달기지, 군사거점 등으로 사용되었다(金慶南, 2015a).³⁾ 이 때문에 일본내각과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게 된 법적 근거와 절차는 당연히 일본의 행정기관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었다. 즉, 이 시기 한국에서 거점도시로서 거류지를 설치하거나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모두 일본내각과 육군성 시스템 속에서 정책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그 기록 원본도 일본에 보존되게 되었다. 그 사례로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전주를 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통신망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바로 이 점이 개항기부터 1945년까지 한국기록관리제도를 일국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되는 궁극적인 이유이며, 한일간 수직적 구조 속에서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인 것이다.

또한 통감부 시기에도 전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정책은 물론 중요한 정책, 예산, 인사 결정기록 등 상위레벨에 대한 규정은 한국에는 없었으며, 통감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상위기관에 대한 기록 실태와 그 기록관리제도와 연관해서 파악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국가기록원이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통감부예규철이나 통감부래안철 등도 대부분 결재문서가 아니라 일본에서 결정된 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 한국 기록관리 제도를 파악할 때는 일

본의 기록관리제도와 함께 중층적인 구조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大藤修·安藤正人, 1986; 渡邊佳子, 1996, 2013, 2015; 채미하, 2004; 千葉功, 2015).⁴⁾ 이 점은 지금까지 통감부가 한국의 대한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록물을 장악하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일본 본국의 기록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본고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가 일본에 장악되어가던 시기, 일본내각과 군부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하여 한국에 구축한 인프라 관련 기록과 통감부 설치 기록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기록관리 시스템의 중층적·종속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갑오개혁기와 통감부시기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예산·인사 결정 관련 상위레벨의 결재 원본 출처와 편성 실태를 밝히고, 한국의 내각과 통감부가 작성한 하위레벨 공문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가 한국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제도를 검토해오던 것을 일국가적 시야를 넓혀 보다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국과 이른바 전초기지 '보호국'이라는 종속국가 상황에서 양국에서 생산된 기록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본고는 기록사료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기록의 원본 출처 및 원질서 존중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을 분석하고자 한다(大

3) 일본의 대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정한론과 야마가타내각의 대한전략방침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4) 일본의 근대기록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사, 계층구조론, 공문서류의 구조분석, 비밀기록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藤修·安藤正人, 1986; 채미하, 2004).⁵⁾ 한국과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거류지 및 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문서 원본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상하위 레벨 기록에 대한 중층적 질서를 밝히고자 한다. 또 하나의 관점은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가 창궐하던 시기에 일국사적인 관점에서는 총체적인 맥락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을 제기한다. 특히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침략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일본의 한국내 인프라 설치 등에 대한 것은 정책결정, 예산결정, 인사결정권 등이 모두 일본내각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일 양국의 이중적 공간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한국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와 전쟁기, 전쟁후 시기를 시계열적으로 나누어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주관부서가 러일전쟁기까지는 일본 육군성에서, 전쟁 후에는 한국통감부 등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한국의 국가기록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와 일본의 國立公文書館에 보존되어 있는 일본내각이 생산한 통감부 관련 자료(행정문서 1,230여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있는 육군성이 생산한 통감부 관련자료(육군성대일 등),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2. 갑오개혁기 일본식 공문서체제로의 전환과 일본의 한국내 전쟁기반 구축기록

2.1 1894년 대한제국의 일본식 공문서 관리체제로의 전환

일본에서는 1890년에 개정된 각성 관제 통칙(칙령제50호) 제21조에서 총무국 설치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분장으로서 각국(各局)성안을 심사하고 공문을 기초할 것, 공문서류 및 성안 문서를 접수 발송할 것, 본성(本省) 및 성중 각국과 일체 공문서류를 편찬보존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총무국을 두고, 대신관방에서 그 사무를 장악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과 규정은 없었다. 이후 기록국 설치에 통일적인 규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각성에 분담사무로서 일임하게 되었는데, 문서 관리 관점에서 보면, 각 성에서 기록국을 설치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渡邊佳子, 2015, pp. 143-147).

이보다 4년 뒤 조선에서는 일본의 강력한 영향하에 갑오개혁이 추진되었고, 기록관리제도도 일본에서 폐지된 공문식 규정이 거의 그대로 체계화되었다. 1894년 6월 28일 의정부 관제와 함께 각 아문의 관제가 공포되어 기존 관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의정부 산하에 내무·외무·탁지·법무·학부·공부·군부·농상 등 8아문으로 정부조직체계가 개편되었다. 이때 공문서를 보존하고 편찬하기 위하여

5) 기록의 원본출처 원칙과 원질서 존중원칙에 입각하여 기록을 분류하는 것은 구미 각국에서 19세기 이래 분류방식의 대원칙이다. 안도 마사히토(安藤正人)는 근현대사료분류론에서 사료분류의 2개의 원칙인 출처원칙, 원질서 존중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료는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의정부에는 기록국 각 아문에 총무국을 두고, 그 산하에 문서과, 왕복과, 보고과, 기록과 등을 설치하여 업무를 분장하였다(大宅儀一, 1941, pp. 302-303); 이승일, 2004, pp. 6-7).⁶⁾

당시 공문서식과 작성 절차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규격화된 기안문이 등장한 것으로서, 기안문은 정부조직의 문서행정 절차를 서식으로 반영한 것이다.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실무담당자가 기안문을 작성하고 중간관리자, 최종결재자에 이르기까지 승인과 결재과정을 거친 후 시행문을 작성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안문은 작성한 관청에서 그대로 존안하고 시행문은 해당 관청에서 존안하는데 이때 편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기안문을 작성하게 됨에 따라 행정문서 절차와 책임소재 뿐만 아니라 공문서관리 체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 시기 기록관리체계 변화는 일본의 1886년 공문서 체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이경용, 2002a; 김건우, 2008a; 이영학, 2013).

그런데 갑오개혁기 공문서체계가 일본식으로 변화된 것은 개화과정권이 명치유신을 본 따 근대국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속셈은 전쟁에 필요한 설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함이었으며, 나아가 일본은 고문관정치 등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고자 한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하고, 갑

오정권의 핵심인물인 김홍집과 유길준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개혁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자금이었고, 일본에 차관자금을 받는 대신 고문관을 병용하는 조건이었다. 1894년 7월 15일 ‘의안’으로 ‘각부 아문에 외국인 고문을 두는 건’을 제정하였다. 고문관은 서양인과 일본인으로 대별되는데 공문서 제도는 바로 일본인 고문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건우, 2008a, p. 70).

일본은 청국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3일전 7월 28일 무츠 무네미즈(陸奥宗義)외상이 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공사에게 ‘조선정부가 일본인을 고빙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⁷⁾ 청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동아시아에서 남하하고 있던 러시아와의 일전을 대비하고 있던 일본은 한국의 내정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이른바 고문관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청국과의 승리로 대만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정부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1월 21일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는 고종에게 20개 개혁안을 설명하고 다케히사 카즈조(武久克造)를 조선경무청의 고문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여 곧바로 고종의 허락을 받아냈다. 이로써 최초의 일본인 고문관 고빙이 실현되었다(왕현중, 2003, p. 194). 이후 조선정부의 왕실 조직 행정기관 등 거의 모든 부서에 일본인 고문관과 고문보좌관이 침투하여, 각종 일본 법령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문관은 정치·사

6) 문서과에는 각국의 문서와 기안문 등을 심사하고 왕복과는 공문서류의 접수 및 발송을 담당하였다. 보고과는 각국과의 통계안건을 수집하여 표본을 만들어 대신에게 사열하도록 보내고 아울러 관보에 게재하도록 관보국에 보내며, 기록과는 해당 아문의 일체의 공문서류를 보존하고 편찬하였다.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 계획하는 문권을 사안(査案), 이를 문서에 표현하는 문권을 기안(起案) 또는 입안(立案)이라고 하며, 기안문서가 회의를 통해 승인 또는 수정을 거쳐서 최종 결재를 완료한 경우를 성안(成案)이라고 부른다. 성안이 시행된 후에는 이를 원안(原案)이라고 하여 편찬 및 보존대상 문서로서 취급되었다.

7) 外務省, 日本外交文書, 27(I), 文書番号425(1894年7月28日付).

회·경제·산업기술 각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활동하였는데 특히 통신, 우편, 철도 등 이른바 근대화 사업으로, 전쟁준비와 관련된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고병되었다(김진우, 2008a, pp. 70-71; 이원순, 1990; 김현숙, 1999).

이렇게 일본과 조선의 행정조직체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공문서관리제도와 관련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대한제국 고문관 비용에 대한 것은 일본내각에서 기안하여 천황의 최종결재를 받아 실시하였고, 이때 작성된 기록들은 모두 일본 내각이 생산한 御署名原本, 公文類聚, 公文雜纂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오개혁기의 공문서관리체계의 일본화는 단순히 기록관리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일본에 종속되어가는 체제와 관련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2.2 1894년 일본 육군성의 한국내 인프라설치 관련 기록 실태

2.2.1 청일전쟁·동학농민전쟁기 한국내 인프라설치 관련 공문서 실태

그러면 청일·동학농민전쟁기 대한제국의 청군 출병 요청과 일본 육군성에서 작성한 조선 내 인프라 설치 기록을 대상으로 이 시기 한국과 일본 기록관리 구조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일제는 대중국, 대러시아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한국에 전략적으로 전쟁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부산, 인천, 원산, 군산 등 개항장·개시장을 중심으로 거류지를 개발하여 일본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이 거류지들은 한국이 강제 병합된 뒤 모두 각 지역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손정목, 1986; 김경남, 2012). 이렇듯 일본의 전략적 거류지 개발은 일제가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물자조달, 인력조달을 위한 기지개발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또한 전쟁 시 정보 유통과 군수·군사이동을 위해 철도와 통신망 설비는 무엇보다도 필수불가결한 전략이었다.

그러면 일본 내각이 한국내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 작성한 기안문을 작성된 순서대로 살펴 보면서 현재 원본 보존위치와 편성구조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본고에서는 일제가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전주를 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통신망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김경남, 2015b).

첫째, 일본이 한국내 통신망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에 소장되어 있는 공문서는 각사등록에 수록되어 있는 문서를 들 수 있다. 이 문서는 일본의 한국내 통신설비와 관련하여 지방관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문건이다. 이 기록물이 작성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군이 1894년 1월부터 전라도 정읍을 중심으로 남부일대를 장악하고 6월에 전주성에 입성하게 되자, 조선 정부가 농민군 진압 명목으로 청군에게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것을 빌미로 일본군은 7월 23일 경북공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결국 일본정부는 강제로 청국군 구축 의뢰서(淸國軍 驅逐 依頼)를 조선정부로부터 받아냈고⁸⁾ 한국에 상륙한 육군은 군사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고 전략적

8) 參謀本部(編). (1907). 明治廿七八年日清戰史. (一). 1907. 132.

으로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 관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 <자료 1>은 각사등록에 기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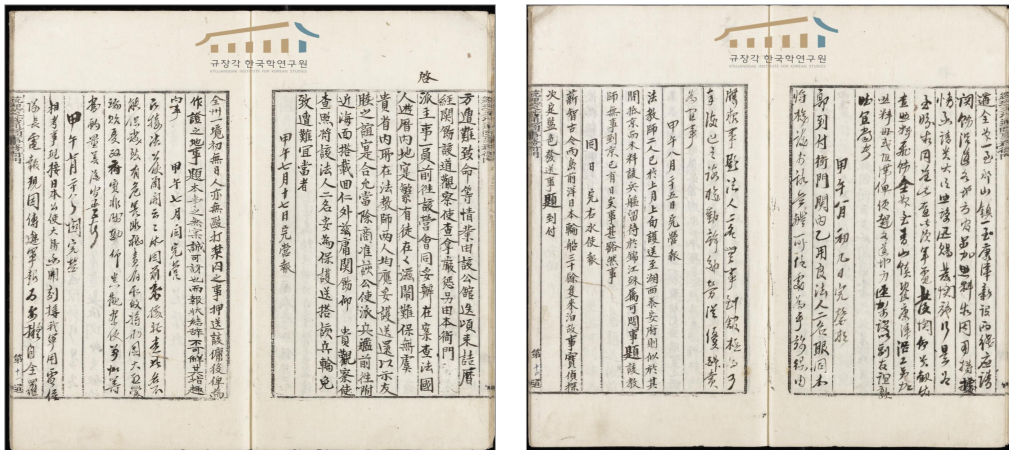
위의 문서는 1894년 7월 28일, 일본공사 오시마가 부산-대구-전주-군산-강진을 연결하는 통신선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관청에 협력하도록 통달하고 있다. 이 기록물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한제국의 정부기록류, 각사등록 시리즈에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겉으로는 협력체제를 취하면서도 조선인 인부들에게 일본의 전신망 설치 고용에 응하지 않도록 하였다(時事新報, 1894.7.6.). 결국, 일본정부는 조선정부에게 지방관리들에게 협력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서 ‘人馬雇人方ニ關する統理衙門ノ文書’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⁹⁾ 일본군은 이 문서를 가지고 지방 관리에게 협력을 요청해갔다. 그러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관리도 많아서,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공문서가 ‘중이쪽지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계속 지방관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훈령 명령이 빈번하게 내려졌다고 한다(宮內彩希, 2010, pp. 54-55).

둘째, 위의 공문서는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청일전쟁 선포 공문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문건은 천황이 생산한 것으로서, 일본 국립공문서관 御署名原本에 편성되어 있다. 일본은 조선에 정보통신망을 설비하였으며, 결국 8월 1일 일본은 청국에 선전 포고하였고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청일전쟁은 육군성, 육해군 참모본부, 추밀원 등에서 회의를 거쳐, 일본 천황이 ‘清國ニ對シ宣戰’ 공문서에 어새를 찍음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재되었다. 원본은 일본 내각의 ‘御署名原本・明治二十七年’에 편철되어 있고,¹⁰⁾ 현재 國立公文書館 분관에 보존

<자료 1> 각사등록에 기재된 일본의 한국내 통신설비 관련 기록



출전: 각사등록 전라도편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9) 參謀本部(編). 明治廿七八年役 日清戰爭 實記. 上. (2) 7月26日(防衛省防衛研究所図書館所藏)
10) 詔勅八月一日. 御01620.

되어 있다(〈자료 2〉 참조).

이 공문서에는 '독립국가인 조선에 대하여 청국이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비난하고, 일본은 조선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문구만을 보면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주지하듯이 실제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선전포고가 된 것이다. 조선은 일본의 선전포고 없이 전장터가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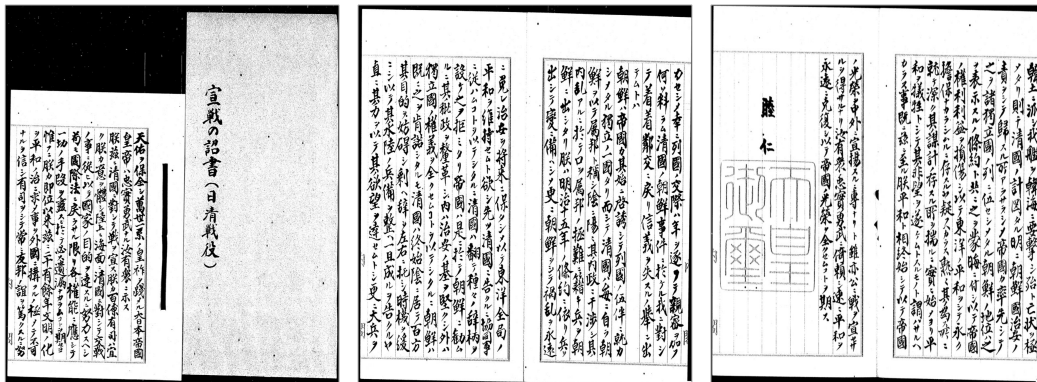
셋째, 청일전쟁을 선포한 일본이 한국에 통신망을 시급하게 설치하기 위해 작성한 공문을 들 수 있다. 〈자료 3〉은 이를 증명해주는 결재 문서로서, 일본 육군성 병참총감이 작성한 조선국 대구 등에 전선을 가설하는 건(朝鮮國大邱等に電線架設の件)이다.

위의 공문서는 일본 육군성 병참총감이 대구, 전주, 강진 등에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청구하기 위한 공문서로 朝密333호

로 긴급하게(至急) 처리된 것이다.¹¹⁾ 8월 22일 일본 육군성에서는 조선국 부산부터 대구부까지 전선은 기존 것을 사용하고, 대구부로부터 전주를 거쳐 강진현 부근 해안에 이르는 전선과 전주로부터 군산진에 이르는 전선을 가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였다. 결재라인은 연대과장, 연대부장, 주무과장, 주무부장, 고급부관, 차관의 협조를 얻고, 육군대신이 최종 결재하였다. 이 기안문에는 병참총감 가와가미 소로쿠(川上操六)가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에게 보내는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다(發第185号, 至急).

이보다 조선이 더욱 종속적 구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은 8월 26일 일본이 강제로 맺은 「양국맹약」 체결이다. 제2조에 '일본국은 청국에 대해 공수 전쟁에 임하여 조선국은 일본병이 후퇴하거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편의를 봐줄 것'이라고 되어 있어, 일본군은 조선정부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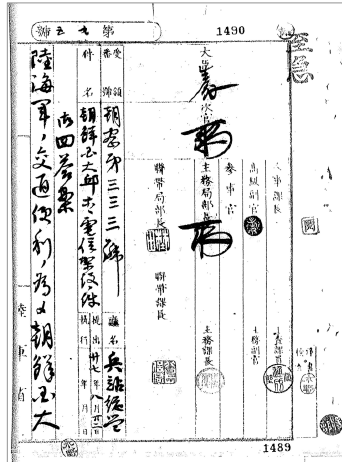
〈자료 2〉 청일전쟁 선포관련 천황의 서명원본



출전: 御署名原本・明治二十七年 清國ニ對シ宣戰 (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11) 陸軍省. 明治27年7月~8月. 着電綴(三). 兵站總監. 朝鮮國大邱等に電線架設の件. M27-5-117(所藏館: 防衛省防衛研究所).

〈자료 3〉 1894년 일본육군성 병참총감이 작성한 통신망 개설 관련 기안문



출전: 陸軍省, '兵站總監' Series 明治27年7月~8月

인부나 식량을 조달할 의무를 강요하였다(宮內彩希, 2010, p. 55).

그런데 여기서 갑오개혁기 기록물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청일전쟁 선포 16일 전, 정권을 주도하던 개혁파 관료들이 행정제도를 개혁하여 '각부 각아문 통행규칙'과 사무관리규정을 마련한 것이다(지수결, 2005). 7월 14일 의안으로 '각부 각아문 통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1886년 2월 제정된 일본의 '각성관제통칙'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이경용, 2002b). 개혁파 관료들은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델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 하였으나, 결국 한국의 행정체계를 일본식으로 전격적으로 바꿈으로써 일본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전쟁시설기반을 구축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이용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정부가 자국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외세를 끌어들이므로써 점차 일본의 종속국으로 전략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어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기록물들도 점차 밀접한 연관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정부가 조선에 전략적 시설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은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서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어갔다. 그 중심에 일본 고문관을 통한 내정간섭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일본내각과 천황의 최종결재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일본이 작성한 전쟁준비, 전쟁결정 기록은 조선 국가의 존망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영향력을 주었으며, 이는 갑오개혁기 기록물관리제도의 일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 일본소재 인프라관련 결재기록의 보존 실태

그러면 이 기록들과 관련된 원본기록들의 보존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자. 위에서 검토한 공문서 가운데 일본에서 생산된 공문서 원본들은 모두 현재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보존되어

있다. 육군성 기록군은 당해 기관에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방위연구센터에서 이 자료군은 유별부목 분류방식으로 편철되어 있으며, 그 계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육군성 기록은 대체로 육군성 대일기(陸軍省 大日記)와 육군 일반 사료(陸軍 一般 史料)로, 해군성 기록은 해군성 공문비고류(海軍省 公文備考類), 해군 일반 사료(海軍 一般 史料)로 시리즈를 분류하고 있다. 육군성 대일기류는 1866년부터부터 1945년까지 작성된 기록군이다. 육군성에 왕래한 공문서류가 편철된 파일의 총칭이다. 각 문서는 그 종류에 따라 서브시리즈로 분류되어 있다. 군사기밀대일기(軍事機密大日記), 밀대일기(密大日記), 육밀·육보(陸密·陸普), 육군성대일기(陸軍省大日記) 등 모두 41개의 서브시리즈로 분류되어 있다.¹²⁾

육군일반사료는 전역(戰役), 중앙, 오키나와·타이완(沖繩 台灣), 만주(滿洲), 중국(支那), 남서(南西), 비도(比島), 문고(文庫)로 분류하고 있다. 해군성 공문비고류는 公文備考等, 戰役等으로, 해군일반사료는 법령, 중앙, 전사(戰史),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함선·육상

부대, 항공부대,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위에서 검토한 육군성 병참총감이 작성한 문건을 ICA가 규정한 국제표준 계층구조로 편성해보면 다음과 같다.¹³⁾

계층구분	내역
Fond	① 陸軍省大日記
Series/ Sub-series	② 日清戰役 〉 戰役日記
File	③ 明治27年8月 着電綴(三)
Item1	④ 兵站總監より朝鮮國大邱等へ電信架設の件
Item2	⑤ 6月29日柴中尉發, 川上總監宛, 大邱と全州間の電信は不確實 今詮議中 ¹⁴⁾
Item3	⑥ 7月27日柴中尉發寺內大佐宛 只今朝鮮線大邱及全州道開通すの件
Item4	⑦ 7月27日 參謀本部宛 ¹⁵⁾

위의 기록물건명은 모두 같은 철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구조는 陸軍省大日記 → 日清戰役 → 大本營電報綴 → 明治27年自6月21日至7月9日『着電綴(二)』로 되어 있다. 청국에 전쟁을 선포하기 몇 일전까지 전략적으로 한국의 대구 전주간에 전신 가설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참모본부에게 요청하는 전보들이다. 이 작업은 결국 8월 22일에 가서 추진된다.¹⁶⁾ 결국, 한국에서 추진된 일본 육군성의 도시

12) 41개의 자세한 시리즈명은 다음과 같다. 軍事機密大日記, 密大日記, 陸密·陸普, 陸軍省大日記, 大日記甲輯, 大日記乙輯, 歐受大日記, 西密受·西受大日記, 陸滿機密·密·普大日記, 陸支機密·密·普大日記, 陸亞機密·陸亞密·陸亞普大日記, 壹大日記, 貳大日記, 參大日記, 肆大日記, 伍大日記, 太政官, 本省布告·規則條例, 陸軍省達書, 陸軍省日誌·送達·受領日誌, 陸軍省各局文書 陸軍省日報·月報等, 軍務官記錄·陸軍省審按, 參謀本部·大本營大日記, 朝鮮事件, 西南戰役, 日清戰役, 日露戰役, 清國事件, 日獨戰役, 各省·各縣文書, 開拓史文書, 外國人關係文書, 參謀本部關係文書, 國際連盟·華府會議·軍縮關係書類, 監軍部等文書, 崩御陸特文書, 陸軍省雜文書, 兵部省陸軍省雜, 陸軍省雜文書, 雪中行軍, 陸軍省雜文書, 霧社事件, 陸軍省雜文書 人事關係 등이다(일본 國立公文書館 아시아역사자료센터 홈페이지 2015).

13) 관리번호 C05121518000(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디지털자료, 원본은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14) 관리번호 C06060763600(출처 위와 같음)

15) 관리번호 C06060809600(출처 위와 같음)

16) 육군병참부, 1894. 朝鮮國大邱等に電線架設の件(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인프라 설치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은 중층적 계층구조하에 분류되어 있다. 육군성 병참총감 작성 공문서 원본은 陸軍省大日記 日清戰役 시리즈에 분류되어 있고, 청일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천황이 작성한 공문서 원본은 御署名原本에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선정부와 사이에 맺은 여러 가지 조약과 시행협력안들은 조선정부의 외사 각사등록, 일본 외무성의 외무성외교자료군에 원본이 각각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기록 관리의 완결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일본 내각, 육군성, 외무성 기록관리 구조를 상호연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한국통감부 설치와 한일간 기록관리의 중층적 구조

3.1 일본내각의 한국통감부 설치와 상위레벨 기록의 실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이른바 '보호국'화하였고, 그 지배기구로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은 친입관으로서 천황에 직예한 천황권 대행자이었다. 그러므로 통감을 천황직예로 한 것은 통감 정치비중을 일본정책 수행상 최상위에 두고 있고, 더욱이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지역의 일부로 간주하고 한국 주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하고 있

었던 것을 의미한다(강창석, 1995). 통감부 설치 후 대한제국에서 시행하는 주요한 정책들에 대한 문서는 모두 통감 승인을 거친 후 왕래하도록 조치하여, 대한제국은 외교권 뿐만 아니라 사법권, 내정까지 거의 실권을 잃어가고 있었다(이경용, 2002b; 김진우, 2008a; 이영학, 2013).

그러면 한국 통감부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을 임명한 것은 어느 기관이고, 이 상위레벨 기록은 어떻게 생산되어 보존되었는가. 한국에 소장되어 있는 통감부 설치와 그 운영과정에 관련된 공문서를 찾아보아도 국가 기록원, 규장각 등에 보존되어 있는 문서는 거의 시행문서이며, 통감부 법령에도 정책, 예산, 인사를 수립하기 위한 법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먼저, 한국관련 기록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일본 國立公文書館, 방위성 방위연구소, 외무성 외교사료센터 등에서 공문서 원본의 출처를 조사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 관련 제 정책과 예산, 인사 등을 담당 한 제 부서가 일본내각, 추밀원, 대장성, 외무성 등에서 관장하였고, 그때 생산된 원본기록물들은 모두 위의 세 기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통감부 관련 원본이 가장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일본의 國立公文書館 홈페이지에서 통감부라고 색인을 이용하여 검색하면 1,217건이 검출된다. 전체적으로 목록을 보면, 대부분 통감부에 관한 관제 및 예산, 인사를 결정하는 상위레벨의 결재문서들이고, 그 원본은 國立公文書館에 보존되어 있다. 이 중 통감

17) 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일제에게 완전히 강점되기 이전, 한반도의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재문서가 일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이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의 골간을 형성하는 통감부 조직과 예산, 직원임용과 관련하여 그 사례를 검토해보자.

첫째, 일본내각이 통감부 및 이사청 조직과 관제를 설치한 기록을 들 수 있다. 일본내각에서 한국통감부를 설치하기로 결재한 것은 1905년 12월 20일이다. 기록물건명은 한국에 통감부 및 이사청을 두는(韓國ニ統監府及理事廳ヲ置ク)건으로서, 일본에서 칙령 제240호로 공포되었다. 이 기록의 편성구조를 ICA(국제기록평의회)의 기록물 분류 계층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역
Fond	內閣・總理府
Sub-Fond	太政官・第六類 公文類聚
Series	第29編・明治38年
File	第二卷・官職一・官制一・官制一 (內閣・外務省)
Item	韓國ニ統監府及理事廳ヲ置ク

이 기록물은 1905년 11월 17일 제국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약 제3조에 기반하여 통감부를 京城에, 이사청을 京城, 仁川, 釜山, 元山, 鎭南浦, 木浦, 馬山 기타 주요지에 두고 당해 협약에 따른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칙령은 통감부법령 보다 상위레벨에 속하며, 공간적으로는 일본 내각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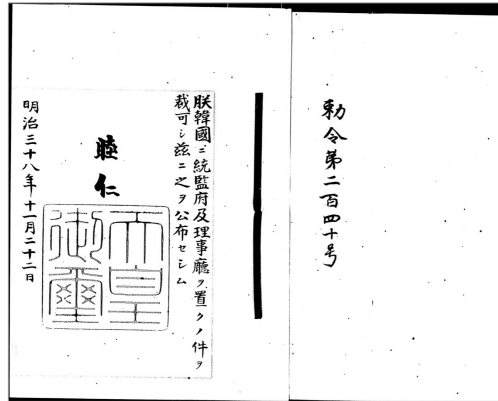
근대 일본의 공문서는 유별부목으로 분류되어 있다(安藤正人, 1985; 채미하, 2004.). 國立公文書館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분석하면, 통감부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시리즈는 천황 서명원본, 제6류 공문유취, 공문잡찬, 임면제가서 등이다. 공문유취는 일본내각에서 생산된 법령관련 기록을 년도별로 편철해 놓은 시

리즈이다. 공문유취(公文類聚)는 종래 태정유전(太政類典)이라는 명칭으로 편철되어 있었는데, 1882년(明治15)부터 공문유취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특수한 부문을 제외하고 정치문으로부터 외사문까지 23부문으로 분류되어, 년도별로 편철되어 있다. 1886년부터는 주로 법률 및 규칙 원문을 편철하고 있다(石渡隆之, 1975). 통감부 경우는 특별히 임시비로 관제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일본내각 다른 기관과 같은 결재루트를 통해 진행되었다. 즉, 내각 법무국에서 기안하여 각성장관 협조를 얻어 내각총리는 상주문을 결재하고 천황에 상주한다. 그 상주결재문은 제6류 공문유취에 편철되어 있다.

내각총리가 상주한 문서는 최종적으로 천황이 어명, 어새를 찍어 사안은 완결되어 마침내 성안이 된다. 이 결재원본은 御署名原本에 편성되어 각 년도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료 4>는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이지천황은 1905년 11월 22일 내각총리의 상주를 받아 한국에 통감부와 이사청을 설치하기 위해 어명과 어새를 찍어 최종결재하였다. 이 문서는 '御署名原本・明治38年'철에 편성되어 있다. 이 문서가 생산되기까지 결재루트는 일본 내각 법무국 기안 - 각성장관 검토 협조 - 내각총리 결재 상주문(公文類聚에 편성) - 천황 최종결재순(御署名原本에 편성)이다. 御署名原本은 메이지천황부터 쇼와천황까지 각 년도별로 편철되어 관리되고 있다. 원본은 國立公文書館 분관에 귀중본실에 보존되어 있다. 이 御署名原本 시리즈에는 통감부와 관련된 결재원본이 196건 편철되어 있다. 모두 통감부를 운영하고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관제, 예산, 인사관련 건이다.

〈자료 4〉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최종결재문(御署名原本)



출전: 御署名原本・明治三十八年・勅令第二百四十号・韓國ニ統監府及理事廳ヲ置ク (國立公文書館 소장)

그러면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어떤 조직이 관여하고 있었는가. 국립공문서관, 외교사료관 목록을 검색해보면, 대체로 일본정부의 추밀원, 내각, 외무성, 대장성, 회계감사원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외무성 외교사료관¹⁸⁾에 보존되어 있는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관련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국 통감부 관련 기록물의 계층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구분	내역
Fond	外務省記録 1門政治
Series	1類 帝國外交
File	2項 亞細亞
Item	帝國ニ於テ韓國ニ統監府並ニ理事廳設置一件 (1905.11.19.-12.19일 작성) 作成者 桂外務大臣, 林公使, 高平公使

이 자료 내용은 11월 19일 오후 6시45분발

전송(電送) 第1006호 재한 카쓰라 외무대신, 하야시공사(제28호)가 이토 히로부미 대사에 게 한국보호조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통감부 및 이사청을 칙령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약속한 대로 의견을 신속히 전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송(電送) 第1010호 11월 20일 오후 8시 40분발 재한 카쓰라(桂) 대신 하야시(林) 공사 (第二八六号), 이토(伊藤) 대사에게 한일의정서 실시에 따라, 각국에 대한 선언서 안을 이미 확정하여 하야시 공사에게 전 보하였고, 통감 기타 직원 관제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외무성에서 작성한 공문서는 통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이나 확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칙령을 발표하기 전에는 대장성과 추밀원이 관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작성한 부국과 기록물건명으로서 이 사실을 증

18) 外務省 外交史料館은 1971년에 외무성 소속 시설로 幕末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 생산된 외무성 관계기록을 보존 이용하기 위하여 개관하였다. 전쟁기간 중 많은 외교기록이 없어졌는데, 이 기관에서 산일된 자료를 수집 복원하고, 연합국에 접수된 기록을 반환받는 등 자료수집에 힘을 기울여 현재 약 48,000책의 戰前期 외무성 기록을 보존 공개하고 있다.

〈표 1〉 한국 통감부 설치 이전 관련 기관 및 기록물건명(國立公文書館 소장)

구분	작성일	작성 부국(편철되어있는 시리즈명)	기록물건명
1	1905.12.18	樞密院(樞密院御下附案・明治三十八年)	統監府及理事廳官制
2	1905.12.19	大藏省財務總合政策研究所財政史室 (明治大正財政史編纂資料/目賀田家文書)	統監府及理事官廳官制に關する會議開催通知
	1905.12.19	大藏省財務總合政策研究所財政史室 (明治大正財政史編纂資料/目賀田家文書)	統監府及理事廳官制審査報告
	1905.12.20	大藏省財務總合政策研究所財政史室 (明治大正財政史編纂資料/目賀田家文書)	統監府及理事官廳官制に關する會議案
	1905.12.	大藏省財務總合政策研究所財政史室 (明治大正財政史編纂資料/目賀田家文書)	統監府の設置と財政顧問の權限
	1905.12.	大藏省財務總合政策研究所財政史室 (明治大正財政史編纂資料/目賀田家文書)	統監府に財政監査官設置に關する勅令案
3	1905.12.22	會計檢査院 總務科	各部課管理事務中統監府附加の件(達第3号)

명해준다.

이렇게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내에서는 내각과 추밀원, 육군성, 대장성, 외무성이 관여하여 조직을 만들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감부관제에 대한 추밀원문서는 1905년 12월 18일 작성된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統監府及理事廳官制)'건으로서,¹⁹⁾ 내각총리 카쓰라 타로가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칙재하고자 추밀원에 의견을 구하는 기안문이다. 12월 20일에 바로 칙령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의 편성구조는 Fond 내각총리부(內閣・總理府), Series 추밀원관계문서(樞密院關係文書), File 추밀원 어하부안·명치38년·하권((樞密院御下附案・明治三十八年・卷下)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기 위한 상위레벨 공문서이다.

둘째, 통감부, 이사청 관제와 직원임용 등 인사관련 상위레벨기록에 대해서 살펴보자. 통감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본내각에서 작성, 상호하여 천황이 서명하여 파견되었다. 그 결재 원본은 『御署名原本』, 『任免裁可書』에 편철되어 國立公文書館에 보존되어 있다. 1905년 12월 20일에 편철되어 있는 칙령안은 다음과 같다.

統監府及理事廳官制(勅令267), 統監府通信官署官制(勅令268), 理事廳職員定員令/統監府及理事廳高等官官等令(勅令269), 統監府總務長官及統監秘書官ノ任用分限及官等ニ關スル件(勅令270), 統監府及理事廳職員特別任用令(勅令271), 統監府及理事廳警察官特別任用令(勅令275), 統監府通信官署職員特別任用令ヲ定メ(勅令276)

관직과 관제 규정을 통해 직원을 임명하는 기안문은 다음과 같다. 1903년 통신관서 및 우편위체 저금관리소 직원에 대한 정원(通信官

19) 國立公文書館 소장 청구번호 本館-2A-015-06・樞A00029100.

署及郵便爲替貯金管理所職員定員)을 칙령 제251호로 정하였다. 이 문서를 보면, 일본 내 각 법무국에서 기안하였고, 각성 장관 검토를 거쳐 협조 사인을 받고, 내각총리가 결재하였다. 내각총리 → 공문유취 → 관직 → 관제 → 직원에 계층화되어 편성되어 있다.

전북지역을 사례로 들면,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던 군산에는 이사청을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였는데, 그 원본결재 문서는 일본 내각 제5류(第五類) 임면재가서(任免裁可書)·명치 39년(明治三十九年)·임면권구(任免卷九)에 편철되어 있다. 1906년 4월 16일에 작성된 문서 건명은 '群山理事廳屬多田桓外三名任官ノ件'과 '群山理事廳屬 多田桓統監府通譯官ニ被任' 건 등이다. 이외에도 통감부와 관련된 일체 인사는 천황의 최종결재를 얻은 후에 시행하였다.

셋째, 다음은 통감부 예산과 관련된 기록이다. 통감부 및 이사청 예산 경비는 임시사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계층구분	내역
Fond	內閣・總理府
Series/ Sub-Series	太政官・內閣關係/第六類 公文類聚 第二十九編・明治三十八年
File	第十二卷・財政五・會計五・臨時補給三
Item1	韓國統監府及理事廳ニ要スル經費ヲ臨時事件予備費ヨリ支出ス(작성일자 明治38年12月20日, 관리번호 類00993100)
Item2	臨時事件に關シ韓國統監府及理事廳に要スル經費金10万円支出の儀外務大臣より請求有(작성일자 1905年12月27日)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통감부 예산은 내각 총리부에서 관장하였고, 문서원본은 第六類 公文類聚 第二十九編・明治三十八年에 편성되어 第十二卷・財政五・會計五・臨時補給三철에 편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의 내용은 통감부 및 이사청에 필요한 경비를 임시사건비에서 지출하되, 경비 10만엔을 의무성 소관 기밀비 39,000엔과 대장성 소관 소금 전매시행 준비비에서 61,000엔을 용도 변경하여 출원할 것을 내각총리가 결재하고 있다.²⁰⁾ 임시사건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한 비용은 통감부 기밀비로 사용되었다. 같은 철에는 통감부 기밀비를 임시사건예비비에서 지출(統監府機密費ヲ臨時事件予備費ヨリ支出ス)하는 건이 편철되어 있다. 내각에서는 1905년 12월 27일에 결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칙제한 후, 통감부 및 이사청에 직원급여령이 발효되었고²¹⁾ 그 경비를 임시사건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였다.²²⁾

넷째, 1907년 제3차 한일협약이 결정된 이후에 통감부는 더욱 한국 내정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이것은 國立公文書館에 보존되어 있는 각종 칙령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본내각과 천황은 한국 사법권은 물론 상표등록, 특허권, 저작권 등 한국의 자본주의적 질서유지와 상품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모든 사항을 칙령으로 정하여 상명하달식 지시를 내리고 있다. 통감부는 이 칙령에 기반하여 대한제국 정부가 조회하도록 조치하였고 그것은 거의 그대로 시행하도록

20) 國立公文書館 청구번호 本館-2A-011-00 類00993100(明治38年12月20日).
 21) 관계 공문서는 統監府及理事廳職員給与令(勅令273) 統監府通信官署職員官等給与令(勅令274) 明治三十三年勅令第四百八(勅令280)이다. 내각의 第六類 公文類聚・第二十九編・明治三十八年・第五卷・官職四・官制四・官等俸給及給与(內閣)에 편철되어 있다. 明治38年12月20日.
 22) 관계 공문서는 '本邦人ニシテ統監府理事廳及統監府通信官署ノ雇員タル者ニハ特二月俸五十円以下ヲ給ス'(第六類 公文類聚・第二十九編・明治三十八年・第五卷・官職四・官制四・官等俸給及給与(內閣...))에 편철되어 있다.

강요당하였다. 이 御署名原本은 신구 헌법, 조서(詔書), 법률, 조약, 정령(政令) 등 천황이 어새 서명한 공포원본이다.²³⁾

다섯째, 이외에도 國立公文書館에 통감부와 관련된 기록물이 편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공문잡찬(公文雜纂)이다. 공문잡찬은 공문유취에 수록된 것 이외에 내각에서 접수한 문서를 1886년부터 작성청별, 년차별로 편철한 것이다. 공문잡찬에 통감부와 관련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통감부 사무 제실제도 조사국 관사내 취급,²⁴⁾ 내각이 작성한 총무관 고등관 서기관 기수 등에 대한 상여 건, 문서발송의 건,²⁵⁾ 거류민단법 시행규칙 통감부령 발포 건, 한국정부 빙용 건 등이 공문잡찬으로 분류되어 각 년도별로 편철되어 있다. 1906년에는 제39권이 통감부 관련 공문서 원본철이다(公文雜纂·明治三十九年·第三十九卷·統監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다음과 같다.

작성년월일	작성부국	기록물건명
1906년 6월29일	內閣	統監府宛文書發送方ノ件
1906년 1월17일	內閣	統監府巡查杉井彦太郎外二百二十三名韓國政府ノ聘用ニ応シ俸給ヲ受クルノ件
1906년 7월2일	內閣	統監府技手小野是一郎外六名韓國政府ノ聘用ニ応シ俸給ヲ受ケ並在職者ニ關スル規定適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국가기록원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은 상위레벨 결재문서들이 일본의 國立公文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공문서들은 거의 내각·총리부 → 태정관·내각관계 → 제6류 公文類聚 → 제29편~제30편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각 편에는 관직, 관제, 임시비용 등으로 구분되어 편철되어 있다. 내각총리 상주서는 공문유취에 천황의 최종결재문서는 御署名原本에 추밀원·대장성·외무성 등 관련 기관은 각각 소관부서에

23) 1907년 行政文書> 內閣·總理府> 太政官·內閣關係> 御署名原本> 明治41년철에 편철되어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韓國特許令·御署名原本·明治四十一年·勅令第九十六号(分館-KS-000-00·御07556100)
 韓國意匠令·御署名原本·明治四十一年·勅令第九十七号(分館-KS-000-00·御07557100)
 韓國商標令·御署名原本·明治四十一年·勅令第九十八号(分館-KS-000-00·御07558100)
 韓國商号令·御署名原本·明治四十一年·勅令第九十九号(分館-KS-000-00·御07559100)
 韓國著作權令·御署名原本·明治四十一年·勅令第二百号(分館-KS-000-00·御07560100)
 統監府特許局官制·御署名原本·明治四十一年·勅令第二百二号(分館-KS-000-00·御07562100)
 統監府裁判所及統監府監獄ノ職員タル韓國人ノ任用分限及給与ニ關スル件·御署名原本
 統監府中學校長ノ任用ニ關スル件·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勅令第七十九号
 韓國人ニ日本法規ヲ適用スル場合ニ關スル件·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勅令第九十

24) 明治38年12月27日 統監府事務靈南坂町一番地帝室制度調査局官舎内ニ於テ取扱ノ件. 公文雜纂·明治三十八年·第百三卷·遞信省~在軍籍者召集免除.

25) 明治39年03月24日 統監府及通信管理局高等官賞与ノ件
 明治39年09月19日 元內務書記官兼統監府書記官久保田政周賞与ノ件
 明治39年11月26日 統監府技師村田素一郎賞与ノ件
 明治39年12月14日 統監府總務長官鶴原定吉外六十名賞与ノ件
 明治39年12月21日 統監府通信管理局長池田十三郎外二十三名賞与ノ件 등
 (모두 公文雜纂·明治三十九年·第六卷·內閣六·內閣六(各官廳高等官賞与)에 편철)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통감부에 대한 정책, 예산, 인사 등 상위레벨 기록들은 일본내각이 작성하였으며, 이것은 國立公文書館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무성과 대장성, 추밀원 기록물 시리즈에 편성되어 있는 기록들은 거의 사본이거나 사안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물 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통감부 생산기록과 대한제국 생산 통감부 관련 기록

3.2.1 통감부가 생산한 기록

결국 한국의 통감부와 대한제국이 생산한 통감부 관련 공문서철은 조직, 예산, 인사를 결정한 결재문서가 아니라 시행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사례로서,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통감부관련 문서철을 살펴보자.

첫째,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통감부에규철(統監府例規 明治三十九年 ~ 明治四十三年)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예규철은 학부 비서관에서, 1905년 통감부 설치시기부터 1910년 강제병합되어 업무를 조선총독부에 이전하는 시기까지 생산한 공문서가 편철되

어 있다. 문서철 표지 왼쪽 위에 '갑'이라고 쓰여 있어 당시 영구문서로 관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경용, 2002b).²⁶⁾

이 공문서철에는 1번 「고문 및 참여관 감독 규정」부터 27번 「병합조약결과 한국과 열국과 조약소멸 및 이에 대신할만한 제국과 열국과의 조약 적용에 관한 건」이 편철되어 있다. 고문 참여관 감독규정, 통감부 문서 취급 규정, 통감부 내훈취급규정, 한국정부 초빙채용자 봉급규정, 명령 및 중요처분 시행할 경우 통감의 승인 양식, 육군군인을 한국정부에 초빙할 때 수속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²⁷⁾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1호 「문서명 고문 및 참여관 감독 규정」이다. 1906년 3월 10일 통감부 총무장관 쓰루하라(鶴原定吉)가 學政참여관 弊原 垣에게 발송한 공문으로서, 주로 고문과 참여관이 한국정부와 협상하는 경우, 제국관청앞으로 오는 문서, 병용이나 해용시 모두 통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6월말, 12월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중요 사안은 수시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둘째, 「통감부 문서취급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문서는 통제3호로서 1906(광무10)년 9월 28

26) 당시 보존기한은 영구문서, 20년, 5년, 1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7) 통감부예규에 편철되어 있는 기록물건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고문 및 참여관 감독 규정 ②동 규정에 의한 직원고빙 승인 품청에 관한 건 ③통감부 문서 취급규정 ④통감내훈 취무심득, 총무장관 통첩 집무심득 ⑤한국정부 병용자 봉급액 승인 39년 칙령 제306호에 준거할 만한 건 ⑥일본인의 한국관리 임명에 관해 통감 동의 양식 ⑦명령 및 중요처분 시행에 관해 통감 승인형식 ⑧秦任官 이상 일본인 임면 등은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통감 동의 또는 승인에 관한 건 ⑨명령 및 중요처분 시행에 관한 통감 승인이유서 첨부 건 ⑩일본 황실 년중 정례의식 등 參賀참배 건 ⑪일본인 고빙직원 이동통지 건 ⑫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촉탁 병용할 경우 취급 건 ⑬타 관청직원 등을 통감부직원으로 전임하여 한국정부에 병용하는 건에서 서로 맞지 않을 경우 ⑭병용관리 진급상 내규 ⑮일본인에 내리는 한국훈장 서훈청구 건 ⑯육군군인 한국정부 응빙 수속 건 ⑰일본인을 순사간수 및 고원이하 채용 건 ⑱일본인 관리 임용할 때 제출해야하는 별표 양식 개정 ⑲1월 1일, 7월 1일 현재 소관 인원 조서에 차출 건 ⑳재관 병용 일본관리 임용 발령 건 ㉑일본인 채용 전 신분 조사 건 ㉒배부용 인쇄물은 통감부 문서사무취급 송부하고 직원 상근할 때 동 사무소에 업무편의에 관한 건 ㉓재관청 병용관리 봉급에 관한 건 ㉔메이지43년 중 칙령 제39년에 관하여 집무하는 건 ㉕필요한 일체 회의 건 ㉖병합조약의 결과, 한국과 열국과의 조약 소멸 및 이에 대신할만한 제국과 열국과 조약 적용에 관한 건.

일 제66호로 통감부 총무부 문서과장 사와다 우시마로(澤田牛麿)가 한국정부 학부 촉탁 오모테 마고이치(倭孫一) 앞으로 보내는 공문서이다. 사와다 이름 아래에 통감부 총무부 문서과장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의 문서를 보면, 한국정부 학부에서 촉탁을 맡고 있는 오모테에게 통감부 문서 취급규정을 보내고 있다. 각부과장이 문서를 관리하고, 중요한 사안은 모두 통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규정해놓았다. 한국정부에 파견되거나 채용된 일본인관리들이 통감부 기록관리규정을 숙지하여, 통감이 한국통치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취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정부에 병용된 일본인들에 대한 통감의 훈시 기록으로서 통발 제2300호 '통감내훈 취무심득, 총무장관 통첩 집행심득'을 들 수 있다. 이 문서는 일본인 관리 중 한국인 관리들을 경시하거나 멸시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었기 때문에 1906년 11월 14일 통감이 직접 통감부, 통감부 소속 관청, 한국주차헌병대, 한국정부 병용 각 고문들에게 보낸 공문서이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 관리 전원에게 보내는 훈시로서, 이른바 '한국 개발과 제국 경영'을 위하여 행동을 자제하는 등 지켜야할 유의사항에 대하여 보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함께 편철되어 있는 다른 공문

서들도 통감부 관제, 예산, 인사를 결정하는 결재문서가 아니라, 이미 일본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들이 대다수이다.

3.2.2 대한제국이 생산한 통감부 관련 기록
통감부에서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의 참서관 박제순에게 서한으로 통달하였다. 이 기록철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는 크게 '통감부래안'(統監府來案)과 '통감부래지안'(統監府來志案)철이 대표적이다. 통감부래안철은 1906년(光武 10)-1910년(隆熙 4) 사이 통감부에서 대한제국 의정부 외사국으로 보낸 공문 및 그 부속 문서를 편철해놓은 것이다. 그 내용은 대한제국과 통감부 각 해당 부국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문서들이다.²⁸⁾ 통감부총무장관과 통감인이 찍혀있다.

그리고 통감부래안철은 1906년(光武 10) 2월부터 1910년 8월까지 대한제국 의정부 외사국에서 통감부에서 받은 문서를 조회하고 다시 통감부로 보내기 위하여 참사대신이 결재를 요청하여 조복한 것을 모은 문서철이다.²⁹⁾ 두 문서 모두 史部 政法類 官署文案 其他로 분류되어

28) 목차 第1冊:1906年 1-6月, 第2冊:1906年 7-9月, 第3冊:1906年 10-12月, 第4冊:1907年 1-4月, 第5冊:1907年 5-8月, 第6冊:1907年 9-12月, 第7冊:1908年 1-4月, 第8冊:1908年 5-12月, 第9冊:1909年, 第10冊:1910年 1-8月, 第11冊(司法件):1909年 11月-1910年8月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29) 목차 英國의 遂安金鑛 採掘에 대한 住民들의 反撥, 各港監理署의 外國인에 관한 事務의 인계, 日本 海軍의 함경도 두만강以南지역의 측량, 鎭南浦土地의 매각, 移民 保護法 및 鑛業法의 반포, 甲山에서의 日人의 森林斫伐, 軍用 철도부지를 侵奪한 民田侵奪, 인천·군산·진남포·목포·성진 등 各港口의 各國居留地地租納付表 및 競賣地區 原價表, 不動產調査官의 파견, 부산 絶影島의 使用權認許, 安眠島漁鹽業特許, 湖南鐵道布設, 진해만·영흥만을 軍港으로 사용, 三井會社의 官麥賣買契約, 各國條約目錄(23件), 未墾地利用法 制定, 捕鯨業管理法發布, 酒稅·烟草稅의 징수 계획, 外國어교사의 초빙, 淸津開放勅令發布, 신문에의 기밀누설금단, 淸의 招商局에서의 借款 結算, 죄수의 사형집행 등에 대한 公文: 특히 第12冊(司法件)에는 폭도나 내란범의 명목으로 체포된 義兵(대개 1907, 1908년의 의병)들의 身上에 관한 사항과 활동경위가 상세히 적혀 있음. 長薰學校之印, 長薰學校校長章, 統監府監查府之印, 統監府參與官. 四部分류는 史部 政法類 官署文案 其他에 분류되어 있다.

있다(〈자료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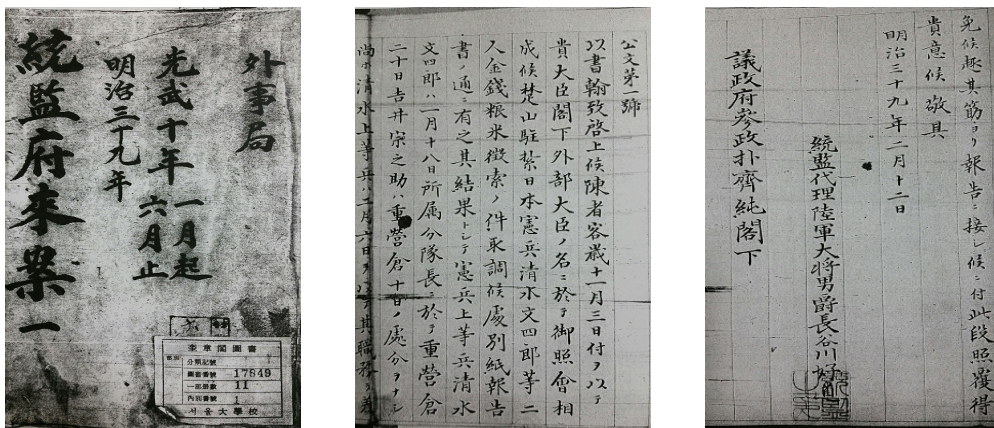
위의 문서철은 통감부 외사국이 작성한 문서를 편철해놓은 공문서이다. 서한 형식을 띠고 있는 이 문서는 통감대리 한국주차군사령관 육군대장 남작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대한제국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1906년 1월 31일 작성한 것이다. '광무10년 1월 31일 제4호로 접수'하였다고 접수도장에 날짜와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은 제국일본공사관과 영사관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한국통감부와 이사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공문서를 토대로, 의정부에서는 조복안을 기안하였다.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통감부래지안(統監府來志案)'철이다(〈자료 6〉 참조).

위의 문서는 통감부래지안철에 수록되어 있는 첫번째 내용으로 의정부가 생산한 공문서철이다.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이 '대일본제국 육군대장 하세가와가 보낸 제국공사관 및 영사관을 폐지하고 동소에 통감부 및 이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결재하기를 바라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통감부가 조회하라고 보낸 것에 대한 답신철이라 하여 조복공문서라고 한다. 통감부와 이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내각에서 결정된 사안을 통감부가 받아 서한을 작성하여, 대한제국 참정대신에게 보내고, 의정부에서는 내각에 이러한 사실을 기안하여 결재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참정대신과 외사국 외사과원까지만 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의정대신이 결재하지는 않은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서는 奎17850로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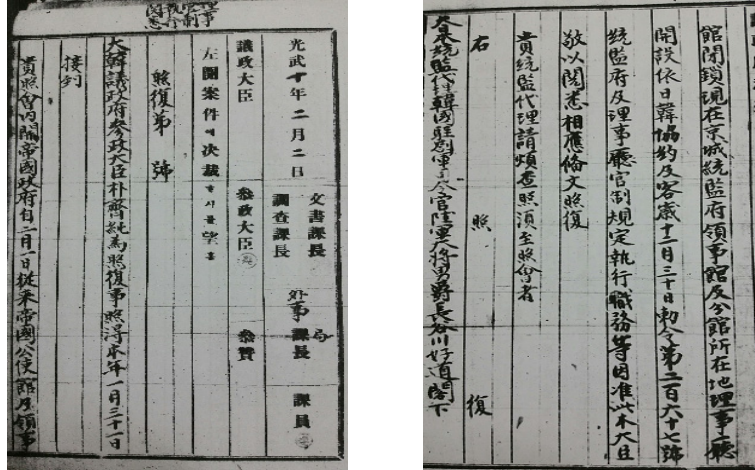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기록원에는 통감부가 생산한 통감부예규철 등이, 규장각에는 통감부가 생산한 통감부래지안철과, 대한제국 의정국이 생산한 통감부래지안철이 있다. 이 문서철들은 모두 통감부를 운용하기 위한 철로서 시행과정에서 생산된 하위레벨의 공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5〉 '통감부래지안철' 표지와 공문 제1호 한국에 통감부와 이사청을 설치하는 건



출전: 統監府來案一表紙 公文第一號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자료 6〉 통감부래지안철 제 1 호 한국에 통감부와 이사청을 설치하는 건



출전: 統監府來志案 第一号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3.3 통감부의 한국 인프라구축 관련 결재구조의 중층성·종속성

이와 같이 한국 통감부를 움직이는 관계, 직원 인사, 비용출자 등에 대한 결재문 원본은 일본 내각의 공문유취, 서명원본 등에 편성되어 있으며, 國立公文書館에 보존되어 있다. 이외에도 일본 내각의 공문유취에는 한국의 철도, 통신망 등 도시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결재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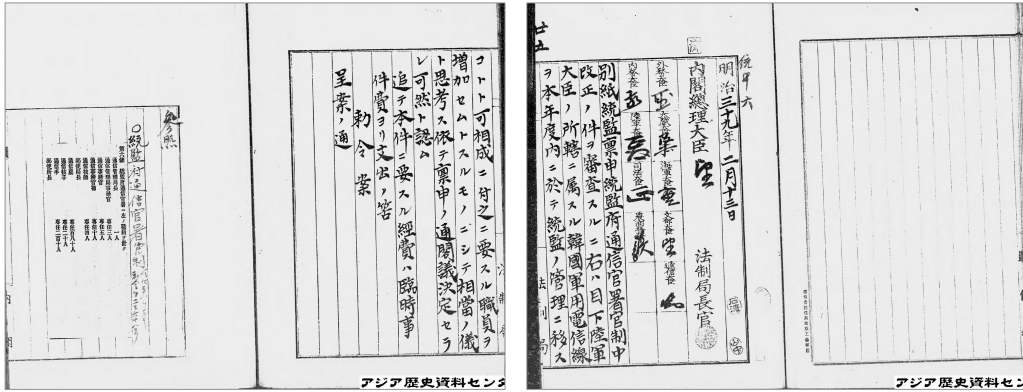
첫째, 그 사례로서 도시 인프라 설치 중에서 근대적 시설로 가장 중요한 통신설비를 들 수 있다.³⁰⁾ 초기에 대한제국정부에서 통신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일본이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축하기도 하였다. 한

국의 통신망을 전쟁기에는 일본육군성이 관할한 것을 알 수 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한국 통감부에 업무를 이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례로서 한국 통감부 통신관서 관제를 개정하는 건으로, 1906년 2월 13일, 통감부 통신관서 관제를 개정함(統監府通信官署官制中ヲ改正ス)을 들 수 있다(〈자료 7〉 참조).

위의 자료는 칙령22호로 내각 법무국에서 기안하여 각성 장관의 검토 협조를 받아 내각총리가 결재한 문서이다. 公文類聚·第三十編·明治三十九年·第五卷·官職四·官制四·官制四·農商務省 廳府에 편성되어 있다.³¹⁾ 육군대신이 소관하던 한국 군용통신선을 1905년 내에 통감 관리로 이관할 것과 직원을 증가할 필요성에 대해 칙령안이 통과되도록 긴급히 각의

30) 통신망의 설치를 통한 근대적인 정보 유통은 자본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는 일본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통례적인 무역과 경제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신설비와는 일정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1) 國立公文書館 청구번호 本館-2A-011-00·類01007100(明治39年02月15日).

<자료 7> 한국군용 통신선관리를 육군성에서 통감부로 이관하는 칙령안



출전: 統監府通信官署官制中ヲ改正ス, 公文類聚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원문은 國立公文書館소장)

를 청하는 내용이다.

또한 5월 14일자 개정안에는 1906년부터 통감부 통신관서에서 한국 국고금 출납보관을 취급하는 일을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소요경비 예산 공포에 대해서 통감부 통신관서 관제 중 별지 칙령안 대로 개정 공포하기를 긴급하게 요청한 기안문이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일본내각과 육군성이 올린 기안문은 일본내각에서 결재된 뒤, 그 시행을 위해 일본 외무성이 대한제국에 의뢰하기도 하였다. 외무성이 작성한 「전주, 군산 및 전주 강진간의 일군용 전선신설에 협조의뢰」건이 그것이다.

둘째, 한국의 철도관리를 일본 육군성에서 통감부로 소관부서를 이전한다는 공문서를 들 수 있다. 1906년 6월 4일 '한국 경성 신의주간 및 마산 삼랑진간 철도를 통감부 소관으로 한다'(韓國京城新義州間及馬山三娘津間鐵道ヲ統監府ノ所管トナス). 이 문서는 육군성이

경부선과 마산-삼랑진선을 통감부 소관으로 이관할 것을 각의에 요청한 것에 대해 내각이 작성한 문서이다. 이 공문서 원본은 일본내각의 공문유취 제30편 명치39년 제3권 관직2, 관제2, 대장성 육군성에 분류되어 편성되어 있다.³²⁾

계층구분	내역
Item	韓國京城新義州間及馬山三娘津間鐵道ヲ統監府ノ所管トナス(작성일자 明治39年06月04日, 청구번호 類01005100)
File	第三卷・官職二・官制二・官制二・大藏省・陸軍省
Series/ Sub-Series	太政官・內閣關係 > 第六類 公文類聚・第三十編・明治三十九年・
Fond	內閣・總理府

이 자료를 통해 육군성이 러일전쟁 시기 군사상 필요에서 한국 철도를 소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쟁 종료 후 한국의 철도업무 를 통감부로 이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1904년부터 1905년 러일전쟁 중에 군사상

32) 國立公文書館 청구번호 本館-2A-011-00・類01005100.

필요에 따라 한국내 경성과 신의주간, 마산과 삼랑진간 철도를 부설하였다. 그런데 러일전쟁이 종료됨과 함께 군사적인 철도사용 빈도는 점차 감소하고 동시에 일반 공중수송 업무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철도를 군부소관으로 할 필요가 없어져 통감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한국철도를 통일적으로 경영할 것을 각의에 청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경부철도를 국유로 하고, 7월 1일자로 통감부 소관으로 할 것을 청의하였다. 결국 이러한 청의는 받아들여져, 경부철도는 국유화되었고, 통감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이 소관변경 작업은 2개월 전 공포된 일본의 철도국유화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법안이 상정된 것은 러일전쟁 후 '일본과 조선, 중국대륙에 일관운송체제를 구축하고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제1차 사이온지(西園寺公望)내각은 1906년 3월 30일 철도국유법을 정함(鐵道國有法ヲ定ム)을 법률제17호로 공포하였다. 이 각의서는 鐵道國有法·御署名原本·明治三十九年(御06463)에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일본내각에서 한국의 인프라시설 관련 정책이 결정된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대륙 침략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결정된 사안은 다시 통감부가 대한제국에 통보하고 시행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 한국 기록관리는 일본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관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고,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한국에 군사요새지대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주차군에 의해 군사요새기지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육군성에서 관리하던 군사시설이 통감

부 설치 이래 통감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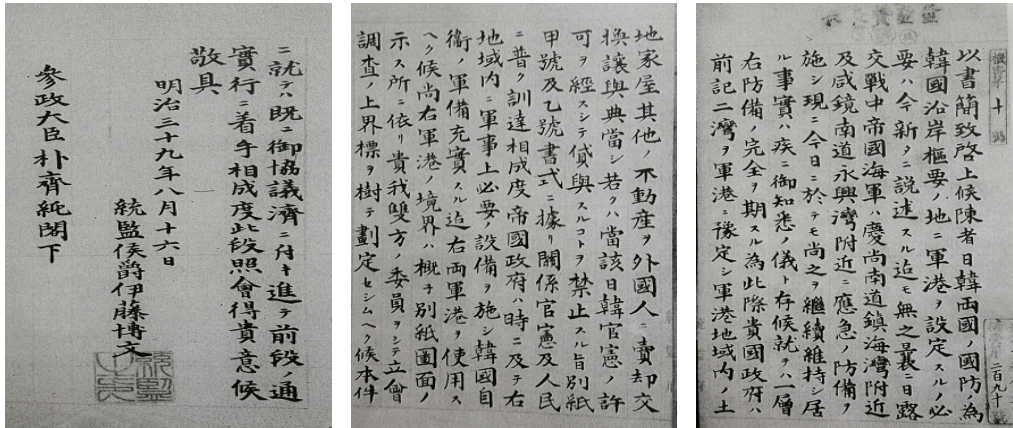
사례로 제시할 문서는 통감부 총무장관 쓰루하라(鶴原定吉)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낸 것으로서 통감부래안 일(統監府來案一)철에 편철되어 있다. 그 내용은 8월 14일 진해만과 영흥만에 한국주차군요새지대 내 출입취체규칙령을 규정하여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통첩하고 있다. 다음 문서는 그 다음날 바로 통감이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낸 통첩문이다(<자료 8> 참조).

위의 문서는 8월 16일 통감 이토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낸 통첩안으로서, 서한 형식을 빌어 통첩안을 보낸 것이다. 러일전쟁시기 일본군요새지대로 쓰던 진해만과 영흥만 일대를 제국전쟁의 군사요새지대로 설정한다는 것을 통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원본은 출처원칙에 입각하면, 일본 국립공문서관이나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원본을 입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방위연구소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진해만요새 병기년보의 건(鎭海湾要塞兵器年報の件)'과 '영흥만요새 병기년보의 건'이 있는데, 이 문서들은 모두 "군사기밀 대일기"에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레벨 기록은 당연히 존재한다면 육군성이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진해만요새 병기년보의 건은 군사기밀수(軍事機密受) 제127호 한병갑(韓兵甲) 제34호 공문으로 1907년 4월 20일자로 보낸 것이고, 그 내용은 4월 15일 한국주차군사령관 남작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에게 보내기 위해

<자료 8> 한국주차군요새지대 설치 통첩안



출전: 統監府來案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작성한 공문으로, 병기취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별지대로 진해만요새사령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것을 보고하는 것이다. 기록의 편성구조는 防衛省防衛研究所 → 陸軍省大日記 → 軍事機密大日記에 편성되어, 明治40年『軍事機密大日記 2/3 明治40年1月 - 6月』철에 편철되어 있다.³³⁾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관제, 예산, 인사 결정권은 모두 일본내각과 천황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통감부와 관련된 소관부서는 일본내각 법무국, 추밀원, 대장성, 외무성, 회계검사원 등이었다. 이 부서들에서 상위레벨에 해당하는 통감부 운영상 필요한 제반 법령과 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천황이 결재하였다. 또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은 한국은 물론 중국대륙까지 일관유통체제를 만들고자 하였기 때문에 철도국유화와 통

신망국유화를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일전쟁기까지 육군대신이 소관하던 통신선과 군용 철도관리 업무가 한국통감부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한국 통감부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상위레벨의 결재원본은 모두 일본내각, 육군성, 외무성 등에 보존되어 있다.

4. 맺음말

본고의 목적은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일본이 장악해가던 시기, 일본내각과 군부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하여 한국에 구축한 인프라 관련 기록과 통감부 설치 기록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기록관리 시스템의 중층적·종속적 구조를 기록사료학적 관점에서 밝히는 것이다.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 갑오개혁기와 통감부시기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

33)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청구번호 C02030321800.

국을 지배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예산·인사 결정 관련 상위레벨의 결재 원본 출처와 편성 실태를 밝히고, 한국 내각과 통감부가 작성한 하위레벨 공문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근대기록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제도의 일본화와 근대성을 논해 오던 것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대륙침략전쟁을 위해 한국에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하는데, 그 정책 결정을 위한 결재 원본이 일본내각이나 군부가 작성하였고 일본의 기록관리시스템 속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영사관, 한국통감부, 이사청 등 지배기구 설치, 종속국에 대한 정책, 예산, 인사 관련 상위레벨의 결재원본은 모두 일본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일 양국 결재의 중층적·종속적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일전쟁·동학농민전쟁·러일전쟁과 관련하여, 일본은 한국의 전주를 중심으로 대구, 군산, 강진 등지에 군사적 통신망, 철도 등 인프라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결국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 변형된 도시개발의 기반이 되는 것이지만, 대륙침략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바로 이 정책을 결정한 결재문서는 당초부터 일본 기록물 시스템 속에서 생산되었고, 일본내각의 공문유취·서명원본, 방위성의 육군성대일기 등에 계층화되어 편성되어 있다.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정부가 지방기관에 협력을 요청한 공문은 조선정부의 각사등록에 편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상위레벨의 공문서 결재 절차는 담당업무와 담당부서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주요한 루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육군 병참부에서 작성하여 각 주무과의 협조를 얻어 육군대신이 결재하는 구조이다. 둘째, 통감부와 이사청을 한국에 설치하는 사안은 일본내각 법무국 기안 → 각성장관 검토·협조 → 내각총리 결재 상서(이상 『公文類聚』에 보존) → 천황 최종결재순(『御署名原本』에 보존)이다. 정책 과정과 관련된 주요 기관은 추밀원, 대장성, 회계감사원, 외무성 등이다. 그러므로 결재문서 원본은 일본의 국립공문서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외무성 외교사료관 등에 각각 유별부목 편성구조에 따라 보존되어 있다. 다만 GHQ가 압수해갔다가 반환한 공문서나 최근까지 각 성이 보존하다가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한 문서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하위레벨 기록으로서, 한국에 주재한 영사관, 통감부가 작성한 기록, 대한제국이 통감부로부터 받은 기록은 일본내각에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시행문이 대부분이다. 이 공문서는 대한제국 정부기록류 각사등록과 통감부래시안철, 통감부래안철 등에 편철되어 관리되었다. 이 기록들은 현재 한국의 국가기록원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 기록관리제도는 일국사적 관점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되며, 한·일간 수직적 연관구조 속에서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다.

본고는 갑오개혁기와 통감부설치기 일제의 대륙침략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추진한 인프라 설비 기록과 통감부 설치기록을 중심으로 상하위레벨 기록실태와 그 편성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기록과 조선정

부·대한제국정부가 시기별로 어떠한 문서를 어느만큼 생산했는지, 한국의 공문식과 일본의 공문유취에 대한 편성구조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大韓帝國議政府(1905-1910). 統監府來志案 서울: 규장각
 大韓帝國議政府(1905-1910). 統監府來案一 서울: 규장각
 統監府(1905-1910). 統監府例規綴 대전: 국가기록원
 日本內閣總理府(1894-1910). 御署名原本. 東京: 國立公文書館
 日本內閣總理府(1894-1910). 公文類聚. 東京: 國立公文書館
 日本內閣總理府(1894-1910). 公文雜纂. 東京: 國立公文書館
 日本內閣總理府(1894-1910). 任免裁可書. 東京: 國立公文書館
 陸軍省(1894-1910). 陸軍省大日記. 東京: 防衛省防衛研究所
 外務省(1894-1910). 外務省外交史料. 東京: 外務省
 內閣官房記錄課 編(1927). 現行法令輯覽. 上.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 강창석 (1995). 한국통감부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구한국외교문서.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국립전주박물관 (2003). 大韓帝國期 古文書. 전주: 국립전주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편) (2009).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宮內彩希 (2010). 日清戰爭における朝鮮人人夫の動員. 日本植民地研究. 22, 53-69. 日本史研究會.
 權泰憶 (1994).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 체계의 변화. 奎章閣, 17, 77-98. 서울대학교 奎章閣.
 김건우 (2006). 갑오개혁기 『공문식』과 공문서의 변화. 古文書研究, 29, 137-162. 韓國古文書學會.
 김건우 (2007). 구한말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관한 일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111-128. 한국기록관리학회.
 김건우 (2008a). 근대 공문서의 탄생. 서울: 소와당.
 김건우 (2008b). 통감부시기 토지·가옥 증명문서에 관한 고찰. 法史學研究, 37, 71-97. 韓國法史學會.
 김경남 (2003). 일제하 근대도시 인천에 관한 공문서. 인천학연구, 2-1, 555-571.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김경남 (2005). 日帝強占期 釜山地域 市街地計劃 公文書. 港都釜山, 21, 219-259.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 김경남 (2012). 한말 진해만요새시대 형성과 도시개발의 변형. 향도부산, 28, 1-5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김경남 (2014). 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기록의 재인식 - 조선의 식민지 지배·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 281-318. 한국기록학회.
- 金慶南 (2015a). 朝鮮海峽への要塞・軍港建設と國際關係, 坂本悠一(編). 地域と軍隊 帝國の最前線. 吉川弘文館.
- 김경남 (2015b).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구조 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1. 한일관계사학회.
- 김문식 외 (2009). 규장각 -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金相湫 (1986). 朝鮮時代の 公文書管理. 書誌學研究, 창간호, 157-175. 서지학회.
- 김재순 (1992). 韓國 近代 公文書管理制度의 變遷. 기록보존, 5, 35-49.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 金才淳 (1995). 일제의 公文書制度 장악과 운용의 실제. 韓國文化, 16, 353-384.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 김재순 (1997). 국가기록 분류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기록보존, 10, 79-91.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 金泰雄 (1995a). 甲午改革期 全國 邑事例 편찬과 '新定事例' 마련. 國史館論叢, 66, 43-60. 國史編纂委員會.
- 金泰雄 (1995b). 대한제국의 역사적 위치. 大韓帝國期 古文書. 國立全州博物館.
- 金泰雄 (2000). 甲午改革 前後 地方 公文書管理의 변화. 奎章閣, 23, 141-155. 서울대학교 奎章閣.
- 김현숙 (1999). 한말 조선정부의 고문관정책(1882-1904). 역사와 현실, 33, 217-255. 한국역사연구회.
- 大宅儀一 編 (1941). 公文起案の實際.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 大藤修, 安藤正人 (1986). 資料保存と文書館學. 東京: 吉川弘文館.
- 渡邊佳子 (1996). 明治期中央行政機關における文書管理制度の成立. 安藤正人・青山英幸(編). 記録史料の管理と文書館.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 渡邊佳子 (2013). 內閣制創設期における記録局設置についての一考察. GCAS Report 學習院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科アーカイブズ學專攻研究年報. 學習院大學.
- 渡邊佳子 (2015). 日本近代における公文書管理制度の構築過程-太政官制から內閣制へ. 安藤正人・久保亨・吉田裕(編). 歷史學が問う公文書の管理と情報公開. 大月書店.
- 李相燦 (1997). 규장각소장 자료의 公文書 分類圖章에 대하여. 書誌學報, 20, 49-81. 韓國書誌學會.
- 박성준 (2008). 대한제국기 公文書의 편철과 분류. 서지학연구, 41, 317-354. 서지학회.
- 박성준 (2009).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 보존기관 起算과 책정 기준. 韓國史學報, 35, 261-294. 고려사학회.
- 박준호 (2006). 『經國大典』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古文書研究, 28, 111-128. 韓國古文書學會.
- 石渡隆之 (1975). 公文類聚の構成. 北の丸, 14. 國立公文書館報. 國立公文書館.
- 손정목 (1986). 한국 개항장 사회구조변화연구. 서울: 일지사.

- 시귀선 (2003). 대한제국시기 기록문화. 大韓帝國期 古文書. 국립전주박물관.
- 신병주 (2006). 왕실에서의 기록물생산과 보존. 고문서연구, 28, 1-15. 한국고문서학회.
- 신병주 (2008).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록학연구, 17, 39-84. 한국기록학회.
- 安藤正人, 久保亨, 吉田裕 編 (2015). 歴史學が問う公文書の管理と情報公開. 東京: 大月書店.
- 왕현중 (2003).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비한국학연구총서. 20. 역사비평사.
- 이경용 (2002a). 한말 기록관리제도: 공문서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161-224. 한국기록학회.
- 이경용 (2002b).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1894~1969).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승엽 (2014).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및 공문서관 소장 이왕가 관련 문서의 현황과 연구. 藏書閣, 31, 80-106.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승일 (2004). 조선총독부 공문서제도 - 起案에서 成冊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9, 6-7. 한국기록학회.
- 이승일 (2007).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 기록학연구, 15, 3-37. 한국기록학회.
- 이영학 (2007). 갑오개혁시기 기록관리제도 변화. 역사문화연구, 27, 89-12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이영학 (2014). 통감부의 기록장악과 조선침탈. 기록학연구, 41, 213-260. 한국기록학회.
- 이원순 (1990). 한말 일본인 고빙문제연구. 한국문화, 11, 537-582.
- 일본 國立公文書館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검색일자: 2015. 7. 1.
<http://www.jacar.go.jp/DAS/meta/MetaOutServlet>
- 鄭肯植 (2002). 韓國近代法史攷. 서울: 博英社.
- 정일균 (2009). 갑오·을미개혁기 학부의 공문서 관리제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편). 高宗 時代 公文書 研究. 태학사.
- 정일균 (2014). 갑오개혁기 정부의 공문서제도. 사회와역사, 101, 267-310. 한국사회사학회.
- 지수걸 (2005). 총론: 한국의 '근대'와 기록관리. 한국국가기록연구원(편), 기록사료관리와 근대. 서울: 진리탐구.
- 채미하 (2004). 일본근대역사기록물의 분류와 기술.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千葉功 (2015). 戰前期日本における公文書管理制度の展開とその問題性. 安藤正人・久保亨・吉田裕(編). 歴史學が問う公文書の管理と情報公開. 大月書店.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sia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2010). Diplomatic documents of Great Han Empire. Seoul: Asia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 Cabinet Secretariat Record Section (ed) (1927). Collection of Current Legislation(現行法令輯覽). Tokyo: Imperial Society of Local Administration.
- Chae, Mi-Ha (2004). The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the Japanese Modern Historical documents. Seou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rchives & Records.
- Gang, Chang-Seok (1995). A Study on the Residency-General, Seoul: Kookhak Co., Ltd.
- Giichi Oya (ed) (1941). The actual drafting of official documents. Chosen Book Publication Co., Ltd.
- Isao Chiba (2015). The Developments and problems of management system of official documents in the Pre-war Period. Development and the problem characteristics of the official document management system. Masato Ando · Toru Kubo · Yutaka Yoshida (ed). Management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official document which history asks. Otsuki Bookstore.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 Retrieved July 1, 2015, from <http://www.jacar.go.jp/DAS/meta/OutServlet>
- Jeong, Geung-Sik (2002). A Study on History of the Korean Modern Law. Seoul: Bakyounng-sa.
- Jeong, Il-Gyun (2009).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Department's Management System of Official Documents in the Period of Gabo-Eulmi Reform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 Study on the Official Documents in the Gojong Period. Tae Hak Sa.
- Jeong, Il-Gyun (2014). The official Document System of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Gabo Reformation Period. Society and history, 101, 267-310. Korea Society Historical Society.
- Jeonju National Museum (2003). Old documents in the Korean Empire. Jeonju: Jeonju National Museum.
- Ji, Su-Geol (2005). General Studies: 'modern of Korea'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rchives & records(ed), Historical data recording management and Modern Korea. Seoul: Jillitanggu.
- Kim, Geon-Woo (2006). Transmutation of "official formula(k公文式)" and the official documents in the Gabo Reform period. Journal for Archives Research, 29, 137-162. Korean Society for Archives.
- Kim, Geon-Woo (2007). A Study of Public Document Management Regulations of Gungnaebu.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7(1), 111-128.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 Kim, Geon-Woo (2008b). A study on the land, Houses proof documents of the Residency-General Period. Journal of Law History Research, 37, 71-97. Korea Law History Society.

- Kim, Geon-Woo (2008a). The create of modern archives. Seoul: SoWadang.
- Kim, Hyun-Sook (1999). The adviser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n the Great Han Dynasty (1882-1904).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33, 217-255. Korea History Research Association.
- Kim, Jae-Sun (1992). Transition of modern archives management system on the Korea. Record Keeping, 5, 35-49. Department Secretary of Govern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 Kim, Jae-Sun (1995). Control of official documents institution and the actual operation under Japanese imperialism. Korea Culture, 16, 353-384.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Kim, Jae-Sun (1997). Evolution and improvement of national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 Record keeping, 10, 79-91. Department Secretary of Govern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 Kim, Kyung-Nam (2003). Official documents related with the modern city of Incheon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Journal of Incheon Studies, 2-1, 555-571. Institute of Incheon Studies, the University of Incheon.
- Kim, Kyung-Nam (2005). Official documents for Busan urban planning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Handobusan, 21, 219-259. Busan Metropolitan Office.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 Kim, Kyung-Nam (2012). The formation of Jinhae Military Fortress Zone and transformation of urban development during the end of the great Han empire. Handobusan, 28, 1-51. Busan Metropolitan Office.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 Kim, Kyung-Nam (2014). Rethinking the Records of the Japan's Korean Colonial Rule and the Post-War Compensation: Focusing on the Dual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Sources of the Documents.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9, 281-318.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 Kim, Kyung-Nam (2015b). The Colonial urban development and the socio-economic structural transformations in Jeonju, a traditional city, during 1894-1930. Journal for Korea and Japan Relationship History, 51. Korea-Japan Historical Society.
- Kim, Kyung-Nam (2015a). Construction for Fortress · Military por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Yuichi Sakamoto (ed). Region and Army- Forefront for Japanese Empire. Yosikaea Publisher.
- Kim, Mun-Sik et al. (2009). The history and documentary heritage of Kyujanggak. Seoul University Publishing Council.
- Kim, Sang-Ho (1986). Management of official documents on the Choseon Dynasty Period. Journal of Bibliographic Research, The first issue, 157-175. Society of Bibliographic Research.
- Kim, Tae-Ung (1995a). Compilation of Upsarae(邑事例) and arranger of Sinjeongsare(新定事例)

- in the Gabo Reform. *Journal for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66, 43-60.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Kim, Tae-Ung (1995b). The historical position of the Great Han Empire. Archives of the Great Han Empire. Jeonju National Museum.
- Kim, Tea-Wung (2000). Transmutation of local archives management during Gabo reform. *Journal of Kyujanggak*, 23, 141-155.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Culture.
- Kwon, Tae-Eok (1994). Changes of the official document system since the Gabo Reform. *Journal of Kyujanggak*, 17, 77-98.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 Lee, Kyoung-Yong (2002). A study for korean modern archival management system history: from 1894 to 1969.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Lee, Kyoung-Yong (2002).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the Great Han Empire: focusing on Archives Administration Regulations.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 161-224.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 Lee, Sang-Chan (1997). Pavilion holdings against the classification stamp of official documents. *Journal of Bibliographic Research*, 20, 49-81. Society of Bibliographic Research.
- Lee, Seung Il (2004).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Governor-General of Chosen - Focusing on from drafting to Completed draft. *Journal of Archival Studies*, 9, 6-7.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 Lee, Seung Il (2007). Archives acquisition activities and rule of the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5, 3-37.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 Lee, Sung-Yup (2014). A Review of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Royal family of Lee in Japan. *Jangseogak*, 31, 80-106.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Lee, Young-Hak (2007). Transformation of Archival system in Gapbo Government.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27, 89-126. Institute for History and Cul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e, Young-Hak (2014). Control of Records by the Residency-General and Japanese Invasion of Joseo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1, 213-260.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 Lee-Won-Sun (1990). A Study for Japanese adviser problem in the Great Han Dynasty. *Korean culture*, 11, 537-582.
- Masahito Ando, Toru Kubo, & Yutaka, Yoshida (ed) (2015). Management of the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which history asks. Tokyo: Otsuki Bookstor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894-1910). Collec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plomacy

- historical materials. Toky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ed) (2009). Review of subject for criminal case records of Kyeong-seong district court.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Osamu Ofuji & Masato Ando (1986). Document preservation and studies for archives. Tokyo: Yoshikawa Kobunkan.
- Park, Jun-Ho (2006). Characteristics of the Official-Documents System under the Kyung-guk-daecheon (經國大典).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28, 111-128. Society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 Park, Sung-Joon (2008). The Classification and Filing of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reat Han Empire. Journal of Bibliography Research, 41, 317-354. Society of Bibliography Research.
- Park, Sung-Joon (2009). The counting and appraisal of a period of preservation official documents between the times of Gabo Reform and The Great Han Empire. Korean History Report, 35, 261-294. Society of Korean history.
- Saki Miyauchi (2010). The mobilization of the Korean Laborers in the Sino-Japanese War. A Colony Study in Japan, 22, 53-69. A Society of Japanese History.
- Shin, Byung-Ju (2006). Record keeping and Conservation for the royal family. Journal for Archives Research, 28, 1-15. Korean Society for Archives.
- Shin, Byung-Ju (2008). Compilation of records and Management of those materials,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Choseon dynasty.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7, 39-84.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 Si, Gwi-Seon (2003). Archives Cultural in the Great Han Imperial Period. Jeonju National Museum.
- Son, Jeong-Mok (1986). Social structure change research for Korea Settlement. Seoul: Iiji publisher.
- Takayuki Ishiwata (1975). Constitution of official documents collection(公文類聚). Kita no Maru. 14. Report for National Archives of Japan. National Archives of Japan.
- The Department of the Army (1894-1910). Collection of department of the army daily documents (陸軍省大日記). Tokyo: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 The Japanese cabinet Prime Minister's office (1894-1910). Collection of Appoint and dismiss approval document(任免裁可書). Tokyo: National Archives of Japan.
- The Japanese cabinet Prime Minister's office (1894-1910). Collection of Official documents(公文類聚). Tokyo: National Archives of Japan.
- The Japanese cabinet Prime Minister's office (1894-1910). Collection of the signature original(御署名原本). Tokyo: National Archives of Japan.
- The Japanese cabinet Prime Minister's office (1894-1910). Miscellaneous Collection of official documents

- (公文雜纂). Tokyo: National Archives of Japan.
-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the Great Han Empire (1905-1910). Notified documents file of the Residency-General(統監府來志案). Seoul: Kyujanggak.
-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the Great Han Empire (1905-1910). Reported documents file Related with the Residency-General(統監府來案一). Seoul: Kyujanggak.
- The Residency-General (1905-1910). Established regulation File(統監府例規綴). Deajeonl: National Archives of Korea.
- Wang, Hyeon-Jong (2003).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 of Korea and Gabo Reform. Yeokbi Korea Studies Research Series, 20. History Criticism Co.
- Yoshiko Watanabe (1996). The establishment of the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the administration central for the Meiji period. Masato Ando · Hideyuki, Aoyama (ed). Management of record historical materials and Archives. Hokkaido University Book Publication Society.
- Yoshiko Watanabe (2013). A study about establish of the Record Bureau in the cabinet system foundation period. GCAS Report-Annual report for Gakushuin University Graduate course in Archives Science. Gakushuin University.
- Yoshiko Watanabe (2015). Construction process of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ese modern times - From a Tejeongkan system to a cabinet system. masahito, Ando · Toru Kubo · Yutaka, Yoshida (ed). Management of the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which history asks. Otsuki Bookstore.